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 명시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74호)

2024. 1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오경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8. 22.

다. 회 부 일 : 2024. 8.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6,058곳이던 작은 도서관은 2023년에는 6,875곳까지 늘어났는데, 전체 6,875곳 중 직원이 있는 도서관은 70.2%인 4,568개관이고 29.8%인 2,307개관은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직원이 있는 4,568개관 중 사서자격증 소지 사서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25.5%인 1,167개관에 불과했고 한 곳당 평균자원봉사자수 역시 2017년 5.0명에서 2020년 3.9명, 2022년 3.4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은 67.2%인 4,623개관으로 32.8%인 2,252개관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할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신 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2. 검토의견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¹⁾으로, 「도서관법」

1)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²⁾는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장서 기준에 대하여 33제곱미터 이상의 도서관 면적과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기준 동 면적·장서 기준을 충족하여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은 총 6,875개관(공립: 1,587개, 사립: 5,288개)임.

그러나 2023년 실시된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작은도서관 중 27.9%(1,918개관)는 직원 없이 자원봉사자들로만 운영되고 있고, 5.7%(389개관)는 운영인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겠음.

또한, 작은도서관 최소 장서 기준인 1,000권 이상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3,000권 미만으로 보유한 도서관이 28.7%(1,848개관)로 나타났고,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작은도서관은 67.2%(4,623개관)으로 장서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음.

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 2) 「도서관법」 제45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도서관 인력·시설·자료)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5(국공립 작은도서관: 사서를 1명 이상 둘 것)와 같다.
-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 것)과 같다.

이에 개정안은 작은도서관의 인력지원, 장서확충,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등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인력 부족 등 지역의 작은도서관들이 겪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3조³⁾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진흥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5조제2항⁴⁾은 작은도서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⁵⁾.

3)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서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에 대한 인력지원, 대출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경우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개정안은 선언적 규정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운 것으로 보았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작은도서관이 양적 증가에 비해 운영 수준이 미흡한 곳이 많으므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작은도서관 책 친구(독서 프로그램)’,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인력지원)’ 등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별도로 도서 및 인력 확충 등을 위한 예산을 아래 표와 같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

지원주체	지원 유형	사업 실적
문화체육 관광부	인력지원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24년 예산 7,330백만원 584개 관에 220명 순회사서 지원
	프로그램	- 작은도서관 책 친구 사업 - 책 친구(사서, 은퇴교사 등) 지원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24년 예산 316백만원, 100개관 지원
지방 자치단체	인력지원	'23년 기준 3,562개관 평균 0.4명 지원
	예산지원	'23년 기준 1,402개관 평균 731만원 지원
	장서확충	'23년 기준 2,367개관 평균 118권 지원
	프로그램	'23년 기준 2,060개관 평균 25건 지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및 2023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문 의 처

02)6788-5379

참고 1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자료: 2023년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보고서

○ 운영 도서관 수

(단위 : 개관)

전체	공립(1,587)		사립(5,288)				
	지자체 직영	민간위탁	개인· 단체	새마을 문고	종교 시설	법인	아파트
6,875	1,044	543	1,437	300	1,110	284	2,157

○ 직원 배치 현황

(단위 : 개관)

구분	직원				사서 자격증 소지 직원			
	공립	사립	전체	%	공립	사립	전체	%
없음	349	1,958	2,307	33.6	1,060	4,851	5,911	86
있음 (1인 이상)	1,238	3,330	4,568	66.4	527	437	964	14

○ 1관당 평균 자원봉사자 수

(단위 : 명)

2021년			2022년			2023년*		
공립	사립	전체	공립	사립	전체	공립	사립	전체
3.4	3.5	3.5	3.3	3.5	3.4	7.3	5.7	6.1

○ 1관당 평균 보유 도서 수

(단위 : 권)

2021년			2022년			2023년		
공립	사립	전체	공립	사립	전체	공립	사립	전체
9,538	5,271	6,272	9,427	5,338	6,273	9,155	5,476	6,354

○ 독서·문화프로그램 실시

(단위 : 개관)

항목	실시함		실시하지 않음		합계	
	관수	%	관수	%	관수	%
전체	4,623	67.2	2,252	32.8	6,875	100
공립	1,155	72.8	432	27.2	1,587	100
사립	3,468	65.6	1,820	34.4	5,288	100